

수원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59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59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009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택

변론 종결2021. 3. 4.

판결 선고2021. 3. 18.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00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물품매매계약 및 2018. 4. 12.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88,2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물품매매계약 및 2018. 4. 12.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88,268원 및 그중 25,775,2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8,513,068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마트모빌리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가전, 전자전기제품, 가정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의 도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7. 10. 23.경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가 2017. 6.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54,000,000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53,600,000원을 2018. 1. 22.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1. 29.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4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3. 29. 4,678,907원을, 2018. 4. 19. 2,213,389원을, 2018. 6. 1. 1,120,038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8년경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8. 5. 1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5, 갑 제2,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사는 2018. 1. 26.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부터의 물품매입을 가장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775,200원¹⁾ 을 지급하고,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25,520,000원, 부가가치세 2,55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8. 4. 12. 유일한 재고자산인 27,512,828원²⁾ 상당의 물품을 피고와 짜고 염가인 8,999,760원에 반품 명목으로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1, 2행위는 모두 채무자 회사가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4,288,268원(= 25,775,200원 + 27,512,828원 - 8,999,760원) 및 그중 25,775,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513,068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2020. 12. 2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2018. 1. 26.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8,072,000원을 송금한 사실, 채무자 회사의 매입장에 2018. 1. 29.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25,520,000원, 부가가치세 2,552,000원(합계 28,072,000원) 상당의 'RS-WH(허브) 400×13,860'에 대한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채무자 회사는 2018. 1. 23. D로부터 15,000,000원을 이체받은 뒤 같은 달 2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13,072,000원을 이체받은 뒤 수분 내에 피고에게 13,072,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채무자 회사의 매출장에는 2018. 5. 11.자로 D에 대한 공급가액 13,636,363원, 부가가치세 1,363,637원(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매출과 주식회사 E에 대한 공급가액 11,883,636원, 부가가치세 1,188,364원(합계 13,072,000원) 상당의 '루메 물품 선수금' 매출이 각 발생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D이나 주식회사 E가 위 2018. 1. 23.자 및 26.자의 이체내역과 별도로 2018. 5. 11. 무렵 위 매출금액을 채무자 회사에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2018. 1. 26.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15,000,000원은 2018. 1. 23. D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13,072,000원은 2018. 1. 26. 주식회사 E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각각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체 및 송금 전후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행위가 가장매매에 따른 대금지급행위로서 채무자 회사의 총재산에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각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2017. 6. 26.경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품목을 포함한 8종, 총 300개의 전동휠 제품을 해당 매수가격 등 합계 90,748,0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가, 2018. 4. 12.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래 [표] 기재 전동휠 재고자산 84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반품 명목으로 8,999,760원(부가가치세 818,160원 포함)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도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제2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행위, 즉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2018. 4. 12.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표]

1	MR2-7L-W	14	195,882원	59,900원
2	MR2-10L-SP	17	270,000원	77,000원
3	MR2-10L-BK	22	270,000원	77,000원
4	MRH-10LB-BK	7	453,600원	140,000원
5	MRH-10LB-W	24	453,600원	140,000원
합계	27,333,948원	8,181,600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고 그 감가상각된 가치에 따라 상당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당초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전동휠을 매수한 것은 2017. 6. 26.경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물품의 사용설명서에는 '본체의 무상 A/S 기간은 1년이고, 리튬이온배터리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급여, 법인카드 미납금, 세금 등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2018. 4. 2. 주식회사 G에 입사하였고, 2018. 4. 12. 이 사건 물품을 반품 명목으로 매도한 뒤 2018. 5. 11. 채무자 회사를 폐업하였으며 2018. 5. 21.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3215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물품은 개봉이나 사용 없이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 A/S 및 보증기간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사와 같은 유통업체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매도 당시에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사건 물품을 상당한 대가에 처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로서 이 사건 물품을 정상가격에 매수한 것일 뿐, 그 매수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와 채무자 회사의 사업장 주소는 모두 '수원시 장안구 H건물, I호'로, 그 각 설립 시(피고는 2017. 6. 5., 채무자 회사는 2017. 6. 2. 각 설립되었다)부터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며 제조·수입사와 유통사로 계속 거래하여 왔던 점, 채무자 회사는 2018. 1.경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염가로 매도한 뒤 한 달 만에 폐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을 전제로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액 27,512,828원에서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금으로 지급한 8,999,76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8,513,068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처분에 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면서도3)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은 이미 처분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그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그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채무자 회사는 2017. 6.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위 [표] 매수가격 합계란 기재 27,333,94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던 점, 위 물품의 사용설명서에는 '본체의 무상 A/S 기간은 1년이고, 리튬이온배터리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A/S 및 보증기간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것으로서 유통업체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함이 없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이를 반품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도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직접 개별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4) 달리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한 가격에 관한 주장 및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이 사건 물품을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지 일반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은 그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위 [표] 매수가격 합계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513,068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44,987,666원(= 53,600,000원 - 600,000원 - 4,678,907원 - 2,213,389원 - 1,120,0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8,513,06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아닌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주문에 대하여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가집행의 선고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김선영

판사김유성

1)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채무자 회사가 2018. 1. 26.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28,072,000원이다.

2) 갑 제4호증의 1(재고 및 불출사실 확인서)상의 2018. 4. 12. 기준 잔여재고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기초한 주장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제2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의 2019. 10. 29.자 준비서면 제3면, 2020. 1. 7.자 참고서면 등 참조